기성 콘크리트 파일 항타 작업의 안전보건작업 지침

1. 목 적

이 지침은 콘크리트파일 항타 작업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낙하, 장비전도, 협착, 추락 건강장해 등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작업 단계별 안전사항 및 안전시설에 관한 기술적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기초말뚝작업을 위해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콘크리트파일 항타 작업에 적용한다.

3. 용어의 정의

- (1) "항타기"라 함은 붐에 파일을 타격하는 부속장치를 설치하여 파일 항타에 사용되는 기계장치로 에너지 공급방식에 따라 드롭해머, 증기, 또는 압축공기 해머, 디젤 또는 가솔린 해머, 진동 항타기 등으로 분류한다.
- (2) 그 밖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4. 항타기 주요 안전장치

(1) "리더(Leader) 경사 각도계"라 함은 본체 및 리더의 경가 각도를 표시하는 장치로 표시각도는 0~± 5°이며 본체가 좌우 각각 1.5° 이상 경사 시경보 발생 하는 것을 말한다.